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국장		
람			제1800호 2023. 12. 4.(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1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지침————— 1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1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19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제1호 중 “프로그램 시작 전 또는 자치센터” 를 “자치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환불)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주민자치회” 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최” 를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3조의 자치센터 운영” 을 “제24조의 자치센터 기능” 으로 한다.

2의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제22조제1항 중 “별표” 를 “별표 2” 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제6호 중 “주민자치회 운영” 을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운영” 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제2호 관련)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운영된 강의에 대한 강사수당은 종전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3조(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반환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제2호 관련)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환불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 2호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범위 내)	비 고
강 사	시 간 당 (1회 1시간)	35,000원	○ 동일 강의 당 지급 한도액: 월 700,000원 ※ 동일 강의: 강사 및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 ※ 1시간 초과 강의 시 시간당의 100% 추가 지급 예) 1시간 35,000원 / 1시간 30분 52,500원 2시간 70,000원 / 2시간 30분 87,500원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강좌		수강료	원		
※ 조례 제29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녀
주 소		전화번호			
수강기간	20 . . . ~ 20 .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절 취 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증(수강생용)					
발급번호	(접수자 : (인))				
수강과목					
성 명		연락처			
수 강 료	금 원				
수강기간	20 . . . ~ 20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 주민자치회장(인)					

※ 뒷면은 수강료 환불 범위기준(제20조제2호 관련) 기재
 (수강증 발급번호 구성 : 20 (년도)-1(발급월)-1(일련번호))

[별지 제12호서식]

문서번호	○○동 주민자치센터 호			<h1>수 입 결 의 서</h1>
시행일자				
회 장		발 의	. . .	
회계책임자		장 수 부 등 재	. . .	
협 조	동 장	수입 연도	20 년도 수입	
	담 당			
결정액	금 원(금 원)			
납입인원	○○○외 명			
적 요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직업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취소내용	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		
	수강료 환불 해당 강좌명		
	전체수강료	학습비 징수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1개월 초과	반환사유 발생한 그 달의 반환 사유 발생일 <input type="checkbox"/> 그 달의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input type="checkbox"/> 그 달의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input type="checkbox"/> 그 달의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세부산출식 =		
취소사유			
환불신청액	금	원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 (절 취 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신 청 인		생년월일	
환불결정액	원	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 동 주민자치센터 호			지 출 결 의 서					
회계책임자		회 장		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협 조		
				세 출 과 목		담 당		동 장
발 의	. . .	인	정책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단위		지출부기재	. . .	인	
계 약	. . .	인	세부		지급 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	. . .	인	편성목		지급 명령 번호	제 호	인	
금 원(금 원)								
적 요								
채 주	주 소 :				계 좌 입 금			
	상 호 :				은 행 명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성 명 인 </div>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계획 및 허가신고의 부적정 또는 불승인 처리 요건 (제6조 관련)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수집·운반 제외)의 사업장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있는 경우
 - 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단,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 이 있는 경우 (단,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되지 아니하게 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 중 지하수로, 하수관거는 제외한다)
 - ※ 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 ※ 수로: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허가·신고·승인 등을 제한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나. (자연/생산)녹지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 다. 임시보관장소
 - 라.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3-1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31, 113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사업명: 마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 12.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31, 113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 명칭: 마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중로2-190호선(L=157m, B=15m), 소로1-4호선(L=289m, B=11m)

- 완충녹지: A=647.8m²
- 어린이공원: A=2,953.3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장 한송희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609번길 23, 마전양우내안애퍼스트힐 경로당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1178	도로	3,105.0	3,105.0	공	인천광역시 서구	
2	1179	도로	2,414.9	2,414.9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1131-3	공원	647.8	647.8	공	인천광역시 서구	완충녹지
4	1131	공원	2,953.3	2,953.3	공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합계			9121.0	9,12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도로	중로	2	190	15	국지도로	157	소로 2-1 (마전동197-11)	산16-7	일반도로		09.06.15	
도로	소로	1	4	11	국지도로	289	소로 2-6	중로2-190	일반도로		09.06.23	

○ 완충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인천광역시 서구)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녹지	완충녹지	마전동1131-3	647.8	09.06.15	

○ 공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인천광역시 서구)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1131	2,953.3	99.06.23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9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22 (금곡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1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12-4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22 (금곡동)	건물 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3 - 2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3. 12.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 치	면적(m ²)
신규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36,689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1) 토지이용 기본계획(안)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2만m² 미만)를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구획하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계획(4만m² 미만)

2) 정비기반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구분	계 획	비고
정비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3-1호선(L=23m, B=5) 폭원 1m 확장 ◦ 소로3-A호선(L=90m, B=6) 신설 ◦ 어린이공원(A=3,900㎡) 신설 	

3) 교통처리 기본계획(안)

-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도록 하여, 지상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소로 3-1호선의 폭원을 5m에서 6m로 변경하고 소로 3-A호선을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구역 외 일부 필지의 진입도로를 개설

5)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689	-	36,68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6,689	감)36,689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36,689	36,689	100.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36,689	30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로 인한 용도지역 상향

나)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름

3. 공람기간 및 장소

- 1) 열람기간 : 2023. 12. 04. ~ 2023. 12. 18. (14일간)
-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주택과, ☎ 032-560-4592)
- 3)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심의 등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의견서

붙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의견서

성 명	(인)	연락처	
거주지 주소			
의 견			
제출일	2023년 월 일		